

2024 NEW ISA 회계감사 요약집(4판) 정오표

도서출판 탐진

| 쪽 | 위 치 | 수정 전 | 수정 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|---|---|--|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|--|----------|---|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|--|----------|---|--|
| 1-12 | 하 10 | ② 이사와 직원 중 <u>10명</u> 이상은 공인회계사 이어야 한다. | ② 이사와 직원 중 <u>7명</u> 이상은 공인회계사 이어야 한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-10 | 상 2 | 회사가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| 회사가 감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-17 | 표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계약수정의 사유</th> <th>사 례</th> <th>감사인인 대응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합리적인 경우</td> <td>① 기업의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는 상황의 변화 ② 당초 요청했던 감사의 성격에 대한 오해</td> <td>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. 이 경우, 감사인과 경영진은 새로운 업무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서(또는 합의서)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.</td> </tr> <tr> <td>비합리적인 경우</td> <td>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이 부정확, 불완전 또는 불만족스러운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(예) 감사인이 매출채권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기업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피하기 위해 감사업무를 검토업무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)</td> <td><선택 1> 원래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한다. <선택 2> 원래의 감사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①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② 해지사실 및 이유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회, 감사 또는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 또는 법규상 의무가 있는지 고려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계약수정의 사유</th> <th>사 례</th> <th>감사인인 대응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합리적인 경우</td> <td>① 기업의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는 상황의 변화 ② 당초 요청했던 감사의 성격에 대한 오해</td> <td>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. 이 경우, 감사인과 경영진은 새로운 업무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서(또는 합의서)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.</td> </tr> <tr> <td>비합리적인 경우</td> <td>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이 부정확, 불완전 또는 불만족스러운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(예) 감사인이 매출채권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기업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피하기 위해 감사업무를 검토업무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)</td> <td><선택 1> 원래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한다. <선택 2> 경영진이 원래의 감사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,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. ① 해당 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함 ② 지배기구, 소유주 또는 규제기관과 같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기타 형태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| 계약수정의 사유 | 사 례 | 감사인인 대응 | 합리적인 경우 | ① 기업의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는 상황의 변화 ② 당초 요청했던 감사의 성격에 대한 오해 |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. 이 경우, 감사인과 경영진은 새로운 업무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서(또는 합의서)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. | 비합리적인 경우 |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이 부정확, 불완전 또는 불만족스러운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(예) 감사인이 매출채권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기업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피하기 위해 감사업무를 검토업무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) | <선택 1> 원래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한다. <선택 2> 원래의 감사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①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② 해지사실 및 이유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회, 감사 또는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 또는 법규상 의무가 있는지 고려 | 계약수정의 사유 | 사 례 | 감사인인 대응 | 합리적인 경우 | ① 기업의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는 상황의 변화 ② 당초 요청했던 감사의 성격에 대한 오해 |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. 이 경우, 감사인과 경영진은 새로운 업무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서(또는 합의서)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. | 비합리적인 경우 |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이 부정확, 불완전 또는 불만족스러운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(예) 감사인이 매출채권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기업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피하기 위해 감사업무를 검토업무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) | <선택 1> 원래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한다. <선택 2> 경영진이 원래의 감사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,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. ① 해당 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함 ② 지배기구, 소유주 또는 규제기관과 같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기타 형태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함 |
| 계약수정의 사유 | 사 례 | 감사인인 대응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합리적인 경우 | ① 기업의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는 상황의 변화 ② 당초 요청했던 감사의 성격에 대한 오해 |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. 이 경우, 감사인과 경영진은 새로운 업무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서(또는 합의서)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비합리적인 경우 |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이 부정확, 불완전 또는 불만족스러운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(예) 감사인이 매출채권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기업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피하기 위해 감사업무를 검토업무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) | <선택 1> 원래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한다. <선택 2> 원래의 감사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①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② 해지사실 및 이유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회, 감사 또는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 또는 법규상 의무가 있는지 고려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계약수정의 사유 | 사 례 | 감사인인 대응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합리적인 경우 | ① 기업의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는 상황의 변화 ② 당초 요청했던 감사의 성격에 대한 오해 |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. 이 경우, 감사인과 경영진은 새로운 업무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서(또는 합의서)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비합리적인 경우 |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이 부정확, 불완전 또는 불만족스러운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(예) 감사인이 매출채권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기업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피하기 위해 감사업무를 검토업무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) | <선택 1> 원래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한다. <선택 2> 경영진이 원래의 감사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,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. ① 해당 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함 ② 지배기구, 소유주 또는 규제기관과 같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기타 형태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-5 | 하 8 | 수행중요성 (ISA 320-9) | 수행중요성의 <u>정의</u> (ISA 320-9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-5 | 하 3 | 수행중요성의 적용 <u>사자</u> (ISA 320-9) | 수행중요성의 적용 <u>이유</u> (ISA 320-9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

| 쪽 | 위 치 | 수정 전 | 수정 후 |
|------|-----------|---|--|
| 3-6 | 하 6 | ② 후속감사절차의 성격, | ② 추가감사절차의 성격, |
| 3-19 | 하 1 | 14 미수정왜곡표시가 중요하면 ~ | 14 미수정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수준은 아니라면 ~ |
| 4-17 | 상 5 | 통계의 운용효과성 테스트 | 통계의 운영효과성 테스트 |
| 5-4 | 상 1 | 부정의 예방 및 발견에 대한 책임 | 부정의 예방, 발견 및 보고(커뮤니케이션) 책임 |
| 5-4 | 하 6 추가 | 부정의 경우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조, 거래의 기록에 대한 계획적인 누락 또는 감사인에 대한 의도적인 거짓 진술 등 정교하고 면밀하게 설계된 수단들이 이용되기 때문이다. (ISA 240-6) | 부정의 경우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조, 거래의 기록에 대한 계획적인 누락 또는 감사인에 대한 의도적인 거짓 진술 등 정교하고 면밀하게 설계된 수단들이 이용되기 때문이다. 이러한 은폐 시도에 공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. 공모가 있으면 감사증거가 실제로는 허위임에도 감사인은 그 증거가 설득적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. 감사인의 부정발견 능력은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의 숙련도, 조작의 빈도와 정도, 공모의 정도, 조작된 개별금액의 상대적 크기, 그리고 연루된 개인들의 조직 내 직위 등 요인에 따라 다르다. 감사인은 부정이 수행될 잠재적 기회는 식별할 수는 있으나, 회계추정과 같이 판단이 수반되는 영역의 왜곡표시는 그것이 부정으로 인한 것인지 오류로 인한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다. (ISA 240-6) |

| 쪽 | 위 치 | 수 정 전 | 수 정 후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7-15 | 상 5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의문이 제기되는 상황</th> <th>감사인의 대응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팩스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으로 수령한 회신</td> <td>전자적으로 전달되는 회신에 대하여 안전절차(☑) 암호, 전자서명,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)를 이용함</td> </tr> <tr> <td>감사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</td> <td>조회처가 감사인에게 직접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</td> </tr> <tr> <td>구두회신</td> <td>직접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조회처에 요청</td> </tr> <tr> <td>회신의 이용에 관한 제한적인 문구가 포함</td> <td>제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회신의 신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| 감사인의 대응 | 팩스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으로 수령한 회신 |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회신에 대하여 안전절차(☑) 암호, 전자서명,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)를 이용함 | 감사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 | 조회처가 감사인에게 직접 서면 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 | 구두회신 | 직접 서면 으로 회신해 달라고 조회처에 요청 | 회신의 이용에 관한 제한적인 문구가 포함 | 제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회신의 신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. | | | |
| | |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| 감사인의 대응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팩스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으로 수령한 회신 |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회신에 대하여 안전절차(☑) 암호, 전자서명,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)를 이용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감사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 | 조회처가 감사인에게 직접 서면 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구두회신 | 직접 서면 으로 회신해 달라고 조회처에 요청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회신의 이용에 관한 제한적인 문구가 포함 | 제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회신의 신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↓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의문이 제기되는 상황</th> <th>감사인의 대응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팩스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으로 수령한 회신</td> <td>전자적으로 전달되는 회신에 대하여 안전절차(☑) 암호, 전자서명,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)를 이용함</td> </tr> <tr> <td><u>조회처가 전자메일로 회신하는 경우</u></td> <td><u>감사인이 조회처에 전화하여 조회처가 실제 그 회신을 보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</u></td> </tr> <tr> <td>감사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</td> <td>조회처가 감사인에게 직접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</td> </tr> <tr> <td>구두회신</td> <td>직접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조회처에 요청</td> </tr> <tr> <td>회신의 이용에 관한 제한적인 문구가 포함</td> <td>제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회신의 신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| 감사인의 대응 | 팩스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으로 수령한 회신 |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회신에 대하여 안전절차(☑) 암호, 전자서명,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)를 이용함 | <u>조회처가 전자메일로 회신하는 경우</u> | <u>감사인이 조회처에 전화하여 조회처가 실제 그 회신을 보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</u> | 감사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 | 조회처가 감사인에게 직접 서면 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 | 구두회신 | 직접 서면 으로 회신해 달라고 조회처에 요청 | 회신의 이용에 관한 제한적인 문구가 포함 | 제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회신의 신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. | |
|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| 감사인의 대응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팩스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으로 수령한 회신 |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회신에 대하여 안전절차(☑) 암호, 전자서명,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)를 이용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u>조회처가 전자메일로 회신하는 경우</u> | <u>감사인이 조회처에 전화하여 조회처가 실제 그 회신을 보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</u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감사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 | 조회처가 감사인에게 직접 서면 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구두회신 | 직접 서면 으로 회신해 달라고 조회처에 요청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회신의 이용에 관한 제한적인 문구가 포함 | 제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회신의 신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7-17 | 상 4 추가 | <p>(a)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</p> <p>(b) 기초잔액에 반영된 적합한 회계정책이 당기재무제표에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, 또는 회계정책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고 적절하게 표시 및 공시되었는지 여부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<p><u>다음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다.</u></p> <p>(a)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</p> <p>(b) 기초잔액에 반영된 적합한 회계정책이 당기재무제표에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, 또는 회계정책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고 적절하게 표시 및 공시되었는지 여부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7-26 | 하 7 추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부 원천에서 나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부 원천에서 나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<u>회계추정치가 관찰가능한 투입자료 혹은 관찰불가능한 투입자료에 근거한 정도</u>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쪽 | 위 치 | 수정 전 | 수정 후 |
|------|------------|--|--|
| 7-27 | 하 13 추가 | <p>(a)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회계추정치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.</p> <p>(b)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테스트한다. 이 과정에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용된 측정방법이 해당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• 경영진이 적용한 가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정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 <p>(c) 적합한 실증절차와 함께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한다.</p> <p>(d)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함. 감사인은 이를 위해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약 감사인이 경영진과 다른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,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가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이고 또 이것이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는데 충분하도록 경영진의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해함 • 만약 감사인이 범위추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면,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하여 범위추정치 내의 모든 결과들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질 때까지 해당 범위추정치를 좁힘 | |
| | | | ↓ |
| | | <p><u>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할 때 회계추정치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(a)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회계추정치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.</p> <p>(b)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테스트한다. 이 과정에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용된 측정방법이 해당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• 경영진이 적용한 가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정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 <p>(c) 적합한 실증절차와 함께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한다.</p> <p>(d)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함. 감사인은 이를 위해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약 감사인이 경영진과 다른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,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가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이고 또 이것이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는데 충분하도록 경영진의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해함 • 만약 감사인이 범위추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면,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하여 범위추정치 내의 모든 결과들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질 때까지 해당 범위추정치를 좁힘 | |
| 7-33 | 상 2 | 특수관계자가 감사의 고유한 계를 증가시키는 이유 (ISA 550-18) |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(ISA 550-18) |
| 7-38 | 상 6 | 감사인측 전문가와 합의할 사항 (ISA 620-11) | 감사인측 전문가와 합의할 사항 (ISA 620-11) |
| 8-9 | 상 4 삭제 | ㉠ 과대계상채무에 대한 미회신가능성 및 ㉡ 과소계상채무 및 부외부채의 경우 근본적으로 조회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. | 과소계상채무 및 부외부채의 경우 근본적으로 조회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. |
| 9-18 | 상 1 | 감사인이 발견한 머수정 왜곡표시의 요약 및 수정권고 | 감사인이 발견한 왜곡표시의 요약 및 수정권고 |

| 쪽 | 위 치 | 수정 전 | 수정 후 |
|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0-11 | 상 8 줄추가 | <p>도입문구</p> <p>①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[당기]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임</p> <p>②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,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할 때 다루어진 사항이며, 감사인은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 않음</p> | |
| | | <p>개별 핵심감사사항 기술</p> <p>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의 각각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은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.</p> <p>①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 중 하나로 고려되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</p> <p>②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있거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특유한 감사인의 대응 및 접근방법 • 수행된 감사절차의 개략적인 개요 • 감사절차의 결과에 대한 암시 • 해당 사항과 관련한 주요 관찰사항 <p>또는 이러한 요소들 중 일부의 결합</p> | |
| | | ↓ | |
| | | <p>제 목</p> <p>“핵심감사사항”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을 사용한다.</p> | |
| | | <p>도입문구</p> <p>①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[당기]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임</p> <p>②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,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할 때 다루어진 사항이며, 감사인은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 않음</p> | |
| | | <p>개별 핵심감사사항 기술</p> <p>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의 각각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은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.</p> <p>①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 중 하나로 고려되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</p> <p>②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있거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특유한 감사인의 대응 및 접근방법 • 수행된 감사절차의 개략적인 개요 • 감사절차의 결과에 대한 암시 • 해당 사항과 관련한 주요 관찰사항 <p>또는 이러한 요소들 중 일부의 결합</p> | |
| 11-5 | 상 3 | 재무제표의 품질관리를 할 때 | 재무제표 감사 의 품질관리를 할 때 |
| 11-5 | 하 8 | 그룹감사팀이 이해할 사항 | 그룹 업무 팀이 이해할 사항 |
| 11-32 | 상 3 | 02 ~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은 ~ | 02 ~ 그룹 재무제표감사 에 대한 책임은 ~ |
| 12-5 | 상 4 | 2.4 구성요소, 원칙-및 원칙달성을 위한 중점 고려사항 | 2.4 구성요소, 원칙 |
| 16-3 | 하 8 | ~ 정식적 상태를 의미하며, ~ | ~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며, ~ |

| 쪽 | 위 치 | 수정 전 | 수정 후 |
|-------|------------|---|--|
| 16-4 | 상 12 추가 | b. 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그 사 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회 사 | b. 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그 배우자(배우자 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으로 한정)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 내에 직원이었던 회사 |
| 16-18 | 상 1 | 8 독립성과 업무수임기간 | 8 독립성 준수 대상기업 |
| 16-36 | 상 4 | 03 ⊖ 금액과 상관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 다. | 03 × 금액과 상관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 다. |
| | | | |